

대전지방법원 2023. 1. 12 선고 2021가합108685 판결 [사해행위취소.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수

피고1. A 주식회사

2. B

3. C

4. D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성

변론 종결2022. 11. 10.

판결 선고2023. 1. 12.

주 문

1. 피고 A 주식회사,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3,989,235원 및 그중 501,960,259원에 대하여 2021. 8. 20.부터 2022. 4. 29.까지는 연 8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가. 피고 C, D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. 5. 31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나. 피고 C, D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2021. 6. 4. 접수 제934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피고 B의 연대보증

1) 원고는 2019. 4. 26. 및 2019. 11. 25. 피고 A 주식회사(이하 '피고 회사'라고 한다)가 주식회사 E(이하 'E은행'이라고 한다)으로부터 자금대출을 받는 것에 대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(이하 순번대로 '이 사건 제○신용보증약정'이라고 하고, 통틀어 일컬을 때에는 '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'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E은행에 각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, 피고 회사가 이를 담보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.

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최종적으로 변경되었다.

1	2019. 4. 26.	45,600,000원	2020. 4. 24.	57,000,000원
2	2019. 4. 26.	240,000,000원	2020. 4. 24.	300,000,000원
3	2019. 11. 25.	212,800,000원	2020. 11. 24.	266,000,000원
합계	498,400,000원		623,000,000원	

2)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, 피고 회사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 원고에게,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손해금,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,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를 보전·이전 및 행사하는 데 든 비용, 피고 회사가 미납한 보증료, 지연보증료, 위약금, 대위변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.

3) 피고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당시 피고 회사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

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

나.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등

1) 피고 회사가 2021. 6. 28. 위 각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함에 따라 위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,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1. 8. 20. E은행에 501,960,259원 [= 45,923,896원(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) + 241,724,843원(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) + 214,311,520원(이 사건 제3신용보증약정)]을 대위변제하였다.

2) 원고가 위 대위변제에 따라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잔액은 2,028,976원이다.

3)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약정손해금율은 원고의 위 대위변제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연 8%이다.

다. 피고 B의 피고 C, D에 대한 부동산 매도

피고 B은 2021. 5. 31. 자신의 누나들인 피고 C,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고 한다)을 매도하고(이하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고 한다),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2021. 6. 4. 접수 제9348호로 피고 C, D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'라고 한다)를 마쳐주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 내지 9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피고 회사,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 회사,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503,989,235원(= 대위변제금 501,960,259원 + 채권보전비용 잔액 2,028,976원) 및 그중 대위변제금 501,960,25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1. 8. 20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2. 4. 29.까지는 약정손해금율인 연 8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피고 C, 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

1)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,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,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(대법원 2002. 11. 8.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).

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아직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지만, 이미 위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성립되어 있었던 점,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21. 5. 31.로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은 2021. 6. 28.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, 이에 원고가 E은행에 신용보증대상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점, 뒤에서 보듯이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,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,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구상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.

2)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,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,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(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9다67252 판결, 대법원 2012. 7. 26. 선고 2010다41850 판결 등 참조).

채무자인 피고 B의 자력에 관하여 살펴본다. 갑 10, 12,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피고 B이 2021. 5. 31. 피고 C,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① 피고 B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, 논산시 F 임야 470m²(이하 '이 사건 임야'라고 한다), 속초시 G오피스텔 제4층 H호(이하 '이 사건 오피스텔'이라고 한다)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던 사실, ② 이

사건 각 부동산의 가격은 최대 86,298,800원(2021. 7. 9. 기준)이고, 이 사건 임야의 가격은 22,560,000원(2021. 12. 3. 기준)이며,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가격은 54,000,000원(2021. 6. 25. 기준)인 사실, ③ 피고 B은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E은행에 대하여 위 각 대출원금 합계액인 623,000,000원 상당의 대출금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, 그 외에 주식회사 I에 대한 40,184,35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정확한 평가액은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, 피고 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.

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,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피고 B이 피고 C, D에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채무자인 피고 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.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C, D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.

3) 피고 C,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)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

(1) 피고 C, D은, '피고 B이 2021. 5. 31.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J(이하 'J은행'이라고 한다)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, J은행의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130,000,000원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격 86,298,800원을 초과하므로,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다'라고 주장한다.

갑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J은행은 2012. 12. 17.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,000,000원, 채무자 피고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,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21. 5. 31. 해지를 원인으로 같은 날 말소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.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J은행의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격 86,298,800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. 오히려 이 법원의 J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,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인 2021. 5. 31. J은행의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 원리금 합계는 8,803,61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, 위 피담보채권액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격 86,298,800원을 초과하지

않음이 분명하다. 더욱이 피고 B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21. 5. 31. J은행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원리금 등을 모두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,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이 될 수 있다. 따라서 피고 C, D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(2) 또한 피고 C, D은, '피고 B이 J은행의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으로 J은행에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다'라는 취지로 주장한다. 그러나 피고 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J은행에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 C, D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.

나)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피고 C, D은,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,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(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), 피고 C,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. 오히려 ① 앞서 보았듯이 수익자인 피고 C, D은 채무자인 피고 B의 누나들인데, 피고 C, D은 피고 B이 연대보증한 피고 회사의 신용보증사고를 불과 1개월 앞두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, ② 한편 원고가 제출한 갑 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피고 C, D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 경위에 관한 문의를 받은 사실, 이에 피고 C, D은 2021. 7. 21. 원고에게 '피고 B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, 그 대물변제 명목으로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'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, 피고 C, D이 피고 B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, 그밖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가 정상적인 거래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, ③ 설령 피고 C, D이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, 채무초과 상태의 피고 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인 피고 C,

D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가 되는 점(대법원 1996. 10. 29. 선고 96다23207 판결 등 참조) 등에 비추어 보면, 피고 C,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 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. 따라서 피고 C, D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.

나.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

앞서 보았듯이 피고 B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J은행의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 원리금 등을 모두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그 자체가 전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이 되고,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C, D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. 따라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하여야 한다. 또한 원상회복으로 피고 C, D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이한상

판사장태관

판사장민하

별지